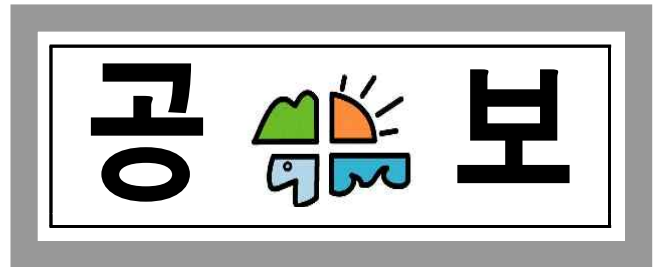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362호 2021년 12월 17일(금)

조 례

- 속초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2
- 속초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
- 속초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8
- 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9
-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10
-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입법예고

- 속초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입법예고 26

발행 : 공 보 감 사 담 당 관 (전화 : 639-2223, FAX : 639-2799)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17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874호

속초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에 소요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건축물을 말한다.

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공공시설

나. 시가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마을회관 등의 공공건축물

2. “표지판”이란 이 조례에서 정한 공개사항을 표시하기 위해 공공시설물에 부착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 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해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지판 설치하는 시가 설치 또는 건립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된 사업은 제외한다.

제4조(공개원칙) ① 속초시장은 공공시설물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에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공개범위) ①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 비용의 공개 대상은 5억원 이상의 공공시설물로 하고, 이에 준하는 대수선이나 구조 변경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 설치 비용은 시설물별로 공개하되,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공개한다.

제6조(공개방법 및 내용) ① 표지판에 표기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② 표지판의 위치, 규격, 재질은 당해 공공시설물에 적절하게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17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875호

속초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0조에 따른다.

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회의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위원의 직무수행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속초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의 방향과 추진목표
2. 분야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17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876호

속초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속초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강원도 속초시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17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877호

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17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878호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예산(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포함한다) 성립 이후 공모 등을 통해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재난, 재해 등으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 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

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

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속초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지방보조금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과장(부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 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 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 사업

② 시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

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이 된다.

제17조(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속초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속초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속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② 속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2호”로 한다.

③ 속초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④ 속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중요재산 현황 보고서

자치단체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 부담금	자기부담금
				시도비 : 시군구비 :	
현재가액(원)					
보조금 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 기간(일자)					
소유자 구분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②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③ 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접수 번 호	제 - 호		통보서 수령일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 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 (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담당 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 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17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879호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저소득주민장학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저소득주민장학금계정

제6조제7항 중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계정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를 “저소득주민장학금계정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의 지급 등”을 “저소득주민장학금의 지급 등”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어려운 가정의 자녀 중”을 “저소득주민으로”로,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학교장·학장·총장”을 “대학생으로 학장 또는 총장 또는 관할동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으로부터장학금”을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으로, “받을”을 “받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 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17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880호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준치기간(연장된 준치기간을 포함한 총 준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을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대상지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56조의2제1항제5호”를 “영 제70조의12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를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로 한다.

제26조의2에 제7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 제11호가목의 아동관련 시설 및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1부터 7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0조제1항제16호 및 제18호 중 “성장관리방안”을 각각 “성장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55조제1항제19호 중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본문 중 “열람의”를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속초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속초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원 신청(안 제2조)
- 나. 지원자격 확인(안 제3조)
- 다. 지원 제한(안 제4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55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36
속초시 보건소(보건희망케어팀)
- 연락처 : 전화(033-639-2073), 팩스(033-639-2554),
전자문서(heezero0623@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보건소 보건희망케어팀(☎ 033-639-20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신청) ① 「속초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 기본지원 대상자가 표준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산모 또는 대리 신청인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별지 서식) 1부
2.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3. 통장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1부.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 기본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이용권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산모 또는 대리 신청인은 별도의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지원자격 확인) ①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신청인의 적격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제한) ① 다른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제도 등 또는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 기본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이용권을 발급받은 경우,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③ 조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출산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속초시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5조(준용)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지원 대상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2022년 1월 1일인 사람부터 소급 적용한다.

